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12. 11 선고 2020가합101518 판결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등  
청구의소]

---

##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준

**피고**B자치단체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현웅

**변론 종결**2020. 11. 27.

**판결 선고**2020. 12. 11.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63,805,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 이 유

### 1. 기초사실

#### 가. 입찰공고

피고는 2019. 5. 21. 「(가칭)C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외부패널 제작설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기초금액을 520,438,000원(= 추정가격 473,125,454원 + 부가가치세 47,312,546원)으로 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를 실시하였다. 당시 이 사건 입찰공고에는 현장설명 실시 없이 D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도면 열람으로 현장설명에 갈음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 나. 물품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위 입찰에 응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9. 6.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C초등학교 교사동 및 강당동에 외벽패널 1,000㎡를 제작·설치하되, 계약금액은 489,170,000원, 납품기한은 2019. 12. 31.까지로 하는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하여 작성된 설계 내역서(이하 이 사건 내역서)에는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각 재료의 수량으로 알루미늄시트판넬(평판) 3,177㎡, 알루미늄시트판넬(곡판) 119㎡, 실리콘수지강판 202㎡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고소작업장비를 20일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원고의 검수요청 및 검수완료

1) 원고는 2019. 10. 28. 피고에게 알루미늄시트판넬 1,571.79㎡에 관한 자재검수요청을 하여, 2019. 11. 29. 피고 건축감리원으로부터 합격통보를 받았다.

2) 원고는 2019. 11. 27. 피고에게 알루미늄시트판넬 2,309.19㎡ 및 실리콘수지강판 202㎡에 관한 자재검수요청을 하여, 2019. 12. 30. 피고 건축감리원으로부터 합격통보를 받았다.

#### 라. 원고의 실정보고

1) 원고는 2019. 12. 23. 피고에게 실제 사용된 수량 및 할증률을 반영하여 이 사건 내역서상의

알루미늄시트판넬(평판)의 수량을 3,177m<sup>2</sup>에서 4,268m<sup>2</sup>(= 실제 사용된 수량 3,880m<sup>2</sup> + 할증수량 388m<sup>2</sup>)로, 알루미늄시트판넬(곡판)의 수량을 119m<sup>2</sup>에서 131m<sup>2</sup>(= 실제 사용된 수량 119m<sup>2</sup> + 할증수량 12m<sup>2</sup>)로, 실리콘수지강판의 수량을 202m<sup>2</sup>에서 222m<sup>2</sup>(= 실제 사용된 수량 202m<sup>2</sup> + 할증수량 20m<sup>2</sup>)로 각 변경하고, 변경한 수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2) 원고는 2019.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내역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퇴직공제부금)이 누락되어 있다면서 내역서에 위 퇴직공제부금 4,720,000원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실정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마. 원고의 제작설치 완료

원고는 2019. 12. 30.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외벽패널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 바. 원고의 실정보고에 따른 피고의 결정통보

피고는 2020. 1. 8.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은 공사이나, 물품계약으로 입찰되어 공사에 적용되는 퇴직공제부금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내역서에는 이미 재료에 대한 할증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재료의 할증률 적용에 관한 오류가 설계변경사항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계변경 및 공사대금 증액요청을 거절하였다.

#### 사. 원고의 조정신청 및 피고의 물품구입 변경통보

1) 원고는 2020. 2. 28. 피고에게 계약금액에서 188,232,000원(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 참조)을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              |                                                     |                           |
|--------------------------------------------------------|--------------|-----------------------------------------------------|---------------------------|
| ① 퇴직공제부금                                               | 4,720,000원   | ① 퇴직공제부금                                            | 4,720,000원                |
| ② 실제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된 재료의 수량 및 할증을 반영에 따른 재료비, 노무비, 경비 증가분 | 117,357,015원 | ② 알루미늄시트판넬의 수량이 117m <sup>2</sup> 증가함에 따른 재료비 등 증가분 | 13,538,070원               |
| ③ ②로 인한 보험료 증가분                                        | 2,604,621원   | ③ 그외                                                | 60,767원                   |
| ④ 3줄비계 미설치 기간 동안 발생한 고소작업장비 임대료 증가분                    | 46,440,000원  | ④ 고소작업장비를 12일간 추가로 사용함에 따른 비용                       | 6,192,000원                |
| A. ①+②+③+④                                             | 171,120,000원 | A. ①+②+③+④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 19,790,000원<br>(천원 미만 버림) |
| B. 부가세(= A×10%)                                        | 17,112,000원  | B. 부가세(= A×10%)                                     | 1,979,000원                |
| C. 합계(= A+B)                                           | 188,232,000원 | C. 합계(= ①+A+B)                                      | 26,489,000원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3. 2. 원고에게 합계 26,489,000원(= 구체적 내역은 위 표 기재 참조) 21,769,000원 + 4,720,000원)을 증액(이하 이 사건 대금증액)하여 계약금액을 489,170,000원에서 515,659,000원(= 489,170,000원 + 26,489,000원)으로 변경하여 준공을 승인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 **아. 피고의 대금지급**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대금 중 410,619,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갑 제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계약의 미지급 대금 및 대금증액에 따른 대금지급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105,040,000원(= 이 사건 대금증액을 포함한 대금 515,659,000원 - 410,6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경비'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므로 피고는 퇴직공제부금 4,72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472,000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바, 위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인 수급인이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인 도급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고(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0677, 40684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60609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공급을 받는 자인 도급인이 거래의 상대방인 수급인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공제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여 반드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설계변경 또는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대금주장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공사계약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계변경 및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된 공사대금 180,062,73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1,769,000원(= 이 사건 대금증액 26,489,000원 - 퇴직공제부금 4,720,000원)의 공사대금 증액만 인정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58,293,730원(= 180,062,730원 - 피고가 인정한 21,76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 [수량차이 및 할증률 미적용] 피고가 ① 이 사건 내역서상 알루미늄시트패널의 수량은 절곡가공수량은 고려하지 않고 안목수량만으로 산출함으로써 실제 사용될 수량보다 적게 산정된 것과 ② 이 사건 내역서상 알루미늄시트패널 및 ④ 실리콘수지강판의 각 수량산출시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설계서의 내용이 누락'된 설계변경에 해당하므로, ①, ② 부분을 시정할 경우 증가된 공사대금(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 참조)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3줄비계 미설치] 3줄비계 미설치로 인하여 원고의 공사비가 증가한 것은 '설계서의 내용이 누락'된 설계변경이거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증가된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수량차이 및 할증률 미적용] 설계서의 내용이 누락된 설계변경

|                                                                                                                                                                                                                                                                                                                              |                                                                                                                                           |                                                                                                                                           |              |
|------------------------------------------------------------------------------------------------------------------------------------------------------------------------------------------------------------------------------------------------------------------------------------------------------------------------------|-------------------------------------------------------------------------------------------------------------------------------------------|-------------------------------------------------------------------------------------------------------------------------------------------|--------------|
| ① 알루미늄시트패널이 사건 내역서상 알루미늄시트패널 수량은 ① 피고가 안목수량만 산출하고 절곡가공수량은 산출하지 않고, ②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아서, 3,296㎡'으로 산정되었다. 실제로 사용된 알루미늄시트패널 수량 3,880.98㎡(= 1,571.79㎡ + 2,309.19㎡)을 기준으로 할증률 10%를 적용하면, 4,269㎡(= 3,880.98㎡ + 388.098(= 3,880.98㎡ X 10%),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으로 산정된다. 위 4,269㎡에서 3,296㎡를 뺀 973㎡에 대하여 증가된 재료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 재료비                                                                                                                                       | 65,687,230원<br>(=973㎡×67,510원/㎡)<br>이 사건 내역서상 평판 알루미늄시트패널과 곡판 알루미늄시트패널의 재료비 단가가 다르나, 원고는 그중 단가가 낮은 평판 알루미늄시트패널의 재료비 단가를 기준으로 재료비를 계산하였다.) | 112,585,830원 |
| 노무비                                                                                                                                                                                                                                                                                                                          | 43,785,000원<br>(=973㎡×45,000원/㎡) 이 사건 내역서상 평판 알루미늄시트패널과 곡판 알루미늄시트패널의 재료비 노무비 단가가 다르나, 원고는 그중 단가가 낮은 평판알루미늄시트패널의 노무비 단가를 기준으로 재료비를 계산하였다.) |                                                                                                                                           |              |

|                                                                                                                                                                                                                                                                                                                                  |                                                                                                 |                                                                                                                                                         |              |
|----------------------------------------------------------------------------------------------------------------------------------------------------------------------------------------------------------------------------------------------------------------------------------------------------------------------------------|-------------------------------------------------------------------------------------------------|---------------------------------------------------------------------------------------------------------------------------------------------------------|--------------|
| ① 알루미늄시트패널이 사건 내역서상 알루미늄시트패널 수량은 ① 피고가 안목수량만 산출하고 절곡가공수량은 산출하지 않고, ②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아서, 3,296㎡'으로 산정되었다. 실제로 사용된 알루미늄시트패널 수량 3,880.98㎡ (= 1,571.79㎡ + 2,309.19㎡)을 기준으로 할증률 10%를 적용하면, 4,269㎡ (= 3,880.98㎡ + 388.098 (= 3,880.98㎡ × 10%)),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으로 산정된다. 위 4,269㎡에서 3,296㎡를 뺀 973㎡에 대하여 증가된 재료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 재료비                                                                                             | 65,687,230원<br>(=973㎡×67,510원/㎡ <sup>2</sup> )<br>이 사건 내역서상 평판 알루미늄시트패널과 곡판 알루미늄시트패널의 재료비 단가가 다르나, 원고는 그중 단가가 낮은 평판 알루미늄시트패널의 재료비 단가를 기준으로 재료비를 계산하였다.) | 112,585,830원 |
| 기계 경비                                                                                                                                                                                                                                                                                                                            | 3,113,600원<br>(=973㎡×3,200원 <sup>4</sup> ) 이 사건 내역서상 알루미늄시트패널 1㎡당 경비의 단가)                       |                                                                                                                                                         |              |
| ② 실리콘수지강판이 사건 내역서상 실리콘수지강판 수량은 ②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아서 202㎡로 산정되었다. 위 202㎡를 기준으로 할증률 10%를 적용하면, 222㎡ (= 202㎡ + 20.2 (= 202㎡ × 10%)), 소수점 이하 버림)이 산정된다. 20㎡ (= 222㎡ - 202㎡)에 대하여 증가된 재료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 재료비                                                                                             | 1,162,760원<br>(=20㎡×58,138원 <sup>5</sup> ) 이 사건 내역서상 실리콘수지강판 1㎡당 재료비의 단가)                                                                               | 2,205,760원   |
| 노무비                                                                                                                                                                                                                                                                                                                              | 996,000원<br>(=20㎡×49,800원 <sup>6</sup> ) 이 사건 내역서상 실리콘수지강판 1㎡당 노무비의 단가)                         |                                                                                                                                                         |              |
| 기계 경비                                                                                                                                                                                                                                                                                                                            | 47,000원<br>(=20㎡×2,350원 <sup>7</sup> ) 이 사건 내역서상 실리콘수지강판 1㎡당 경비의 단가)                            |                                                                                                                                                         |              |
| ③ 위의 증가로 발생한 보험료 등의 증가분                                                                                                                                                                                                                                                                                                          | 산재보험료 증가분                                                                                       | 1,679,287원 (= 노무비의 44,781,000원×3.75% <sup>8</sup> )<br>이 사건 내역서상 산재보험료는 노무비에 3.7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다.}                                                       | 2,413,255원   |
| 고용보험료 증가분                                                                                                                                                                                                                                                                                                                        | 389,594원 (= 노무비의 44,781,000원×0.87% <sup>9</sup> )<br>이 사건 내역서상 고용보험료는 노무비에 0.87%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다.} |                                                                                                                                                         |              |
| 환경보전비 증가분                                                                                                                                                                                                                                                                                                                        | 344,374원 (= 114,791,590원(+) × 0.3% <sup>10</sup> ) 이 사건 내역서상 환경보전비는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                                                                                                                                                         |              |

|                                                                                                                                                                                                                                                                                                                                  |                         |                                                                                                                                           |              |
|----------------------------------------------------------------------------------------------------------------------------------------------------------------------------------------------------------------------------------------------------------------------------------------------------------------------------------|-------------------------|-------------------------------------------------------------------------------------------------------------------------------------------|--------------|
| ① 알루미늄시트패널이 사건 내역서상 알루미늄시트패널 수량은 ① 피고가 안목수량만 산출하고 절곡가공수량은 산출하지 않고, ②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아서, 3,296㎡'으로 산정되었다. 실제로 사용된 알루미늄시트패널 수량 3,880.98㎡ (= 1,571.79㎡ + 2,309.19㎡)을 기준으로 할증률 10%를 적용하면, 4,269㎡ (= 3,880.98㎡ + 388.098 (= 3,880.98㎡ × 10%)),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으로 산정된다. 위 4,269㎡에서 3,296㎡를 뺀 973㎡에 대하여 증가된 재료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 | 재료비                     | 65,687,230원<br>(=973㎡×67,510원/㎡)<br>이 사건 내역서상 평판 알루미늄시트패널과 곡판 알루미늄시트패널의 재료비 단가가 다르나, 원고는 그중 단가가 낮은 평판 알루미늄시트패널의 재료비 단가를 기준으로 재료비를 계산하였다.) | 112,585,830원 |
|                                                                                                                                                                                                                                                                                                                                  | 합계에 0.3%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다.} |                                                                                                                                           |              |

2) [3줄비계 미설치] 설계서의 내용이 누락된 설계변경인 경우 또는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             |
|---------------------------------------------------------------------------------------------------------------------------------------------------------------------------------------------------------|------------|-----------------------------------|-------------|
| 이 사건 내역서 산정의 기초가 된 외부산출서를 보면 C초등학교의 강당동은 고소작업장비를 이용하여 외부패널 설치작업을 하고, 교사동의 경우, 위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수급받은 수급인이 설치해 둔 3줄비계를 이용하여 설치작업을 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C초등학교 교사동에 3줄비계가 설치되지 않아 원고는 고소작업장비를 90일 동안 임대해야 했다. | 고소작업장비 임대료 | 46,440,000원<br>(= 516,000원 × 90일) | 46,440,000원 |
|---------------------------------------------------------------------------------------------------------------------------------------------------------------------------------------------------------|------------|-----------------------------------|-------------|

A. 합계

B. 부가가치세(= A × 10%)

C. 합계(= A + B)

(163,644,845원)

(16,364,484원)

180,062,730원11}(180,009,329원)

##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성격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계약이 공사계약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물품구매'로 입찰공고가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 계약 명칭이 '물품계약'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외부패널을 제작한 뒤 이를 설치까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 피고도 2020. 1. 8. 원고에게 보낸 '실정보고 방침결정 통보'에서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공사라고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공사계약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제22조).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1. 설계변경에 의하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이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설계서'에는 물품규격서도 포함된다.

## 2) 수량차이 및 할증률 미적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수량차이가 설계서의 내용 누락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내역서상 알루미늄시트패널 수량은 3,296㎡이나 실제로는 3,880.98㎡의 수량이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D교육지원청 시설과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열람하여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수량 등을 스스로 산출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입찰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시방서 등을 확인하여 수량을 산출하지 않은 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내역서를 받은 다음 내역서상 금액에 낙찰률을 반영한 이 사건 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점, ③ 원고는 입찰참여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시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수량산출을 하지 않다가 제작설치가 거의 완료될 무렵에 이르러서야 수량차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당초 계약금액의 약 38%의 대금증액을 요구하였으며, 당초 계약금액과 증액요구액의 합산액 677,402,000원으로 입찰공고상 기초금액 520,438,000원을 훌쩍 초과하는 점, ④ 입찰당시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수량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입찰에 낮은 금액으로 참여한 다음 제작설치 완료에 이르러서야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수량차이로 인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입찰제도의 본지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내역서상

알루미늄시트패널의 수량이 원고가 실제 사용한 수량보다 적게 산출된 것이 설계서의 내용 누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할증률 미적용이 설계서의 내용 누락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⑦ 알루미늄시트패널] 실제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알루미늄시트패널 수량이 이 사건 내역서상 수량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내역서상 재료의 수량을 산정할 때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내역서상 재료 수량을 산정할 때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 할증률 10% 혹은 그보다 높은 비율의 할증률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내역서상 재료의 수량을 산정할 때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준품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초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매년 조사, 공표하는 자료인데, 피고가 이 사건 내역서상 재료의 수량을 산정할 때 반드시 위 표준품셈에 따른 할증률을 적용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이를 두고 설계서의 내용이 누락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실리콘수지강판] 할증률은 지방서나 도면 등에 의하여 산출된 재료의 수량에 재료의 운반, 절단, 가공 및 시공 중에 발생하는 손실량을 반영하여 내역서상 수량을 실제로 사용될 수량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용된 수량에 또다시 할증률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내역서상 수량과 실제 사용된 수량이 동일한 것을 보면, 피고는 지방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수량에 할증률을 적용하여 내역서의 수량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3줄비계 미설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교사동의 경우는 C초등학교 신축공사의 수급인이 설치해 둔 3줄비계를 이용하여, 강당동의 경우는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외부패널 설치작업을 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4호증의 1 내지 3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이 사건 사업의 지방서에는 '패널 설치하는 외부비계를 이용하여 최대한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진행으로 외부비계를 철거한 경우 외벽패널 도급자는 장비를 이용하여 미설치된 부분과 미마감된 부분은

공사비 증액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10-3조)고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9. 9. 20.부터 2019. 10. 4.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계약 진행에 관한 회의 시 원고에게 교사동에 설치된 3줄비계가 곧 해체될 예정이니 작업상태를 확인하라고 알렸고, 원고는 이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초등학교 신축공사 수급인이 설치해 둔 3줄비계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사동의 설치작업을 하되, 3줄비계가 해체될 시에는 원고의 비용으로 남은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 이후 교사동에 3줄비계가 설치되어 있다가 2019. 10. 8.경 해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작업 도중 3줄비계가 해체될 것은 이 사건 계약체결시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3줄비계가 해체된 것이 설계서의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보원**

**판사고지은**

**판사김한울**

- 1) 원고는 2020. 7. 7.자 준비서면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2) 이 사건 내역서상 평판 알루미늄시트패널과 곡판 알루미늄시트패널의 재료비 단가가 다르나, 원고는 그중 단가가 낮은 평판 알루미늄시트패널의 재료비 단가를 기준으로 재료비를 계산하였다.
- 3) 이 사건 내역서상 평판 알루미늄시트패널과 곡판 알루미늄시트패널의 재료비 노무비 단가가 다르나, 원고는 그중 단가가 낮은 평판알루미늄시트패널의 노무비 단가를 기준으로 재료비를 계산하였다.
- 4) 이 사건 내역서상 알루미늄시트패널 1㎡당 경비의 단가
- 5) 이 사건 내역서상 실리콘수지강판 1㎡당 재료비의 단가
- 6) 이 사건 내역서상 실리콘수지강판 1㎡당 노무비의 단가
- 7) 이 사건 내역서상 실리콘수지강판 1㎡당 경비의 단가
- 8) 이 사건 내역서상 산재보험료는 노무비에 3.75%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다.
- 9) 이 사건 내역서상 고용보험료는 노무비에 0.87%를 곱하여 산출하고 있다.

있다.

11) 원고 주장의 각 증가된 공사대금의 합계는 180,009,329원[부가가치세 포함, 위 표의()부분의 금액 참조]이다. 그런데 원고는 2020. 7. 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의 당초 계약금액 중 미지급금 78,551,000원, 이 사건 대금증액분을 포함한 추가대금 168,418,350원 및 추가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6,836,380원의 합계 263,805,730원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공제부금 등을 제외한 추가대금은 180,062,730원(= 청구금액 263,805,730원 - 이 사건 계약의 당초 계약금액 중 미지급금 78,551,000원 - 위 2항에서 판단된 퇴직공제부금과 그 부가가치세 합계 5,192,000원)이므로, 원고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